

# 수업운영 규정

- 제 정 1995. 3.
- 개 정 1999. 3.
- 개 정 2000. 3.
- 개 정 2009. 3.
- 개 정 2010. 6.
- 개 정 2011. 12.
- 개 정 2016. 2.
- 개 정 2016. 8.
- 개 정 2017. 5.
- 개 정 2019. 10.
- 개 정 2022. 3.
- 개 정 2024.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에 의거 수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기의 구분)** ①학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기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6.02.01.)

1. 제1학기: 3월 첫 주부터 15주간의 수업기간까지
2. 여름학기: 제1학기 종료 후 5주간의 수업기간까지
3. 제2학기: 8월 마지막 주부터 15주간의 수업기간까지
4. 겨울학기: 제2학기 종료 후 5주간의 수업기간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기 개시 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2016.02.01.)

1. 1학기 및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2.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의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

**제1조의3(특별학기)**(신설2016.08.29.)①학칙 제11조5항에 정한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기개발학기라 함은 진로탐색, 전공탐색, 전공심화, 전공연구, 취·창업 준비 및 어학능력 향상 등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과정에 참여 하는 학기를 말한다.
2. 커리어학기라 함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적을 유지한(졸업유예 기간) 자가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업 및 어학,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기를 말한다.

②자기개발학기는 2학년이상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③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에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출석학습 이외에 과제학습으로 진행 할 수 있다.

④기타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조(강의실 배정)** 강의실(실험실습실 등 포함)은 수용능력과 수강 학생 수를 참작하여 매학기 개강 전

소정 기일에 배정한다.

**제3조(교과 담당교수 선정 및 수업시간표 작성)** ①학부장은 확정된 개강교과목에 따라 교과목별 담당교수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간강사 등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부장은 개강교과목, 교수담당시수 및 시설사용계획이 확정되면 교수별 교과분담 명세표와 학기별 주당 수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수업시간표는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교양강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체 강좌 중 50%이상을 전임교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신설2011.12.26.)

**제3조의2(학습의 형태)**(신설2016.08.29.)①학칙 제11조2항에서 말한 학습의 형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출석학습이라 함은 학기별 개설과목 수업을 담당교수가 직접 이론 또는 실습을 교내·외학습장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이행 여부 등의 확인을 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2. 자율학습이라 함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출석학습이 아닌 학생 스스로 진행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3. 산업체 현장학습이라 함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산업체 등의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 현장수업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4. 과제학습이라 함은 특별교육과정 등에 의하여 출석학습 및 현장학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원격수업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수업을 말한다(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개정2017.05.24.)(개정2024.04.09.)

6. 이동수업이라 함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말한다. (신설 2024.04.09.)

7. 협동수업이라 함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수업을 말한다.(신설2024.04.09.)

②제1항제5호에서 정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5.24.)

**제4조(수업시간 배정기준)** ①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은 주당 4일 이상에 걸쳐 배정하고 학습 구분 당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간강사 등의 수업시간은 사전에 주당 담당 시간과 출강희망 요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정한다.

③수업은 동일교과목에 있어서 이론은 2시간 이내, 실험실습 등은 4시간 이내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론수업을 3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수업시간 단위 및 수업의 형태)** ①수업시간의 단위는 60분을 1시간으로 한다.(개정2011.12.26.)(개정2017.05.24.)

②수업(강의)은 그 운영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2017.05.24.)

1. 일반수업: 1·2학기에는 1~15주 동안, 여름·겨울학기 4~6주 동안 매주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

2. 블록수업: 매 학기 특정 과목을 주 단위 혹은 일 단위로 하여 수업 기간을 압축하여 진행하는 수업(3주간 혹은 15일간 등)

3. 팀티칭수업: 하나의 강좌에 2명 이상의 교수가 주별 또는 수강생을 팀 단위로 나누어 함께 참여하는 수업

4. 공동수업: 하나의 강좌에 2명 이상의 교수가 시수를 공동으로 배분하여 진행하는 수업

5. 병행수업: 이론 및 실습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수업

③제2항 각호의 수업운영형태는 제3조의2에서 정한 모든 수업유형에 적용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7.05.24.)

**제5조의2(학급규모의 설정)** ①학급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수업 등 분반이 필요하지 않은 교과목 또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일반수업 : 30~50명(개정 2019.10.24)
2. 교양(자유)선택 : 30~50명
3. 실험·실습 / 실기 : 20~40명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단위 수업인 경우에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1.12.26.)

1. 강사료의 추가지급
2. 마이크시설, TV모니터의 설치
3. 수업보조 및 출석점검을 위한 조교의 배정(개정 2019.10.24)

③위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강좌 또는 전임교원의 수업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0명 이하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제6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등록)** 교과목 담당교수는 당해 교과목의 교육목표, 주별 수업계획, 참고 도서 및 참고문헌, 평가계획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개시 전까지 본교 전산시스템에 등록(대학정보시스템 등) 하여야 한다.(개정2011.12.26.)

**제6조의2(수업개선)**(개정 2019.10.24) ①교무처장은 전공 및 교양교육 역량을 근거로 교육과정의 개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신설2011.12.26.)

②교무처장은 매 학기 종료 후 교과 담당교수가 교과목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및 점검 하여야 한다.(신설2011.12.26.)(개정2016.02.01.)

**제7조(휴·결강과 보강)** ①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이나 담당교수의 출장, 연수 등에 의한 결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강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③국가공휴일 및 학교에서 정한 임시휴일(개교기념일 등)에 의한 결강은 매 학기 초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11.12.26.)

**제8조(개설인원)** 수강인원이 제5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미달일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여름·겨울학기의 수업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9조(교원 책임시수 등)** ①본 대학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초빙 및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수는 본 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서에 책임시수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시수를 책임시수로 한다.

③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보직을 담당할 경우 보직의 종류에 따라 총장의 승인으로 책임시수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 정한 교수시간 중 강사 6시간 이하, 겸임·초빙 9시간 이하 담당 원칙을 예외로 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9.10.24)

1. 동일 과목의 분반으로 인해 추가된 강좌를 담당하는 경우

2. 기 배정된 교원이 갑작스런 퇴직 및 질병 등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강좌를 담당하는 경우

3. 교원 및 겸임 등의 신규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그 강좌를 대신 배정하는 경우

4. 기타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수업진행관리)**①학부(과)장은 매 학기별 수업을 담당한 교원의 수업진행 현황 및 총괄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사일정에 따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6.02.01.)(개정 2019.10.24)

②제1항을 위하여 매 학기 수업을 담당한 교원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출석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진행 현황 및 총괄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2016.02.01.)(개정 2019.10.24.)

③교원이 수업일수 미준수 등 관련법령 또는 본교 학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교무위원회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22.03.24.)

1. 전임교원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주의 또는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우송학원정관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2. 기타교원(초빙, 겸임, 석좌 등)의 경우 본교 학칙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강사의 경우 결강일의 강사료 미지급, 과목 담당교수 변경,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결강한 강좌의 수업은 해당 교과목 개설학부(과)장의 책임 하에 교내·외 교원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보강수업을 실시한다.(신설2022.03.24.)

**제9조의3(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신설2024.04.09.) ①「예비군법」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동원 또는 훈련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동원 또는 훈련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한다.

3. 그 밖에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을 위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수업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 제1조의2에서 정한 학기의 구분은 2016학년도 신입학생 및 이와 동일한 학년 학기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적용 하며, 이전 입학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학기: 3월 첫 주부터 15주간의 수업기간까지
2. 여름학기: 제1학기 종료 후 6주간의 수업기간까지
3. 제2학기: 9월 첫 주부터 15주간의 수업기간까지
4. 겨울학기: 제2학기 종료 후 6주간의 수업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